

1. 개정이유

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,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·퇴직하는 사람도 전역·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114호, 2020. 3. 24. 공포, 2020. 9. 25. 시행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역·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
 -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
- 나. 한자어를 한글로 변경
 - 사실이 있는 자 ⇒ 사실이 있는 사람
- 다.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‘병적증명서(해당자에 한한다)’를 추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6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
자: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
 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
 할 수 있는 서류 1통

라.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: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(제2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·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)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사람:

라.

-사람:

마.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
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
명할 수 있는 서류 1통

②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3. 병적증명서(해당자에 한하
다)

